

## 소규모 합병 공고

(주)아이마켓코리아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(주)인터파크아이마켓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(주)아이마켓코리아가 (주)인터파크아이마켓을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(주)아이마켓코리아 : (주)인터파크아이마켓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  - 가. 상호 : (주)인터파크아이마켓
  - 나. 본사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65 (서초동, 일홍스포렉스) 2층
4. 합병기일 : 2018년 11월 1일
5. (주)아이마켓코리아와 (주)인터파크아이마켓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- 가. 행사절차 : 2018년 9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 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- 나. 제출기간 : 2018년 9월 12일 ~ 9월 27일
 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 - 1) 명부주주 : 2018년 9월 27일까지 (주)아이마켓코리아 경영관리팀에 제출  
(☎ 02-3708-8247)
    - 2) 실질주주 : 2018년 9월 2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명부주주 행사 기한 1영업일 전까지이며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소규모합병이 불가하고,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대체
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(주)아이마켓코리아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아이마켓코리아와 (주)인터파크아이마켓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 주 번 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8년 [ ]월 [ ]일

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2018년 9월 11일

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대표이사 김규일